## 메는 사용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.X) 민법및민사특별법 7회

(02/23)

1.	주위토지통	행권자는	담장과	같은	축조물이	통행에	방해가	되면	ユ	철거를	청구할	수
	있다. (	)										

- 2. 토지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, 포위된 토지의 특별승계 인에게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 ( )
- \*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·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, 등기 전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(3~7)
- 3.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. ( )
- 4.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도 乙은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 ( )
- 5. 어떤 사유로 甲에게로 X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. ( )
- 6. 만일 丙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,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 ( )
- 7. 乙은 甲이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. ( )
- 8. 등기부취득시효는 유효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무효인 이중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 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. ( )
- 9.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등기의 승계가 인정된다. ( )
- 10.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. ( )
- (11~15) 甲, 乙, 丙이 ⅓지분 씩 공유하는 토지를 甲이 乙, 丙과 협의하지 아니한 채 배 타적으로 점유, 사용하고 있다.
- 11. 乙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 (
- 12. 乙은 모든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 ( )

## 메른♥ 노량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.X) 민법및민사특별법 7회

(02/23)

- 13. 만일 甲이 乙과 협의하였다면 특정부분의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있다. (
- 14. 만일 甲과 乙이 협의하여 이를 A에게 임대차 해주었다면, 이에 동의한 바 없는 丙은 A를 상대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. ( )
- 15. 위의 14 지문에서 丙은 A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 (

## 매일정리노트(O, X) 정답

- 1. (0)
- 2. (O) 무상의 통행권은 분할이나 일부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인정된다.
- 3. (X) 시효완성 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다.
- 4. (X)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- 5. (O) 乙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乙이 甲에 대해 가지는 등기청구권이 소멸하 는 것은 아니다.
- 6. (O) 상대방인 甲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- 7. (X)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한 경우라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.
- 8. (X) 무효인 중복등기나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.
- 9. (O)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처럼 등기의 승계도 인정된다.
- 10. (X)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이다.
- 11. (X)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목적물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다.
- 12. (X)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.
- 13. (O)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관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특정부분의 배타적점유를 할 수 있다.
- 14. (X)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는 적법하므로 배제청구를 할 수 없다.
- 15. (O) 과반수지분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한바가 없다.